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9.>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8. 기타	그 밖에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활용품